



세척제 취급과정 급성중독 발생경보

'22.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 부속품 생산 사업장에서
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**트리클로로메탄**
(클로로포름)에 노출되어 급성 독성간염 발생



[재해원인]

■ 국소배기장치 미설치

- 세척공정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해 세척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근로자 노출

■ 방독마스크 미착용

- 세척작업시 방독마스크 미착용으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



[건강영향]

■ 중추신경계 장애, 간·신장 손상 등

- 1) 중추신경계 : 중추신경계 억제
고농도 노출시 무의식, 혼수 발생
- 2) 간담도계 : 간수치 상승, 황달, 간비대 등 간손상
발생하며, 심할 경우 사망유발 가능
- 3) 비뇨기계 : 신장 손상
- 4) 피부 : 피부건조, 충혈, 홍반, 수포형성 등

[예방대책]

각종 금속제품 세척제는 기본적으로
유해성이 강하므로 충분한 안전보건조치
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1)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선정
- 2) 국소배기장치 설치 가동 및 방독 마스크 착용
- 3) 세척공정 격리



현재 동일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확인, 조사 중에 있습니다.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확인하신 후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가
유성케미칼(경남 김해 소재)에서 제조한 UKLEEN 900DX2, UKLEEN T6인
경우 **가급적 사용을 중단**하시고 취급 근로자들의 건강이상이 있는지

★ 세척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소배기장치 가동 및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

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반드시 건강진단(트리클로로메탄 관련 간기능 검사)을
받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세척제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,
안전보건공단(052-703-0387)으로 연락 주시면 성분 분석을 해 드립니다.